2004 농림사업시행지침(양계분야)

- 농 림 부 -

◈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자율)

1. 사업개요

1) 사업대상지역

4大江(한강 · 낙동강 · 영산강 · 금강) 유역의 특정지역 및 새만금지역, 축산업경쟁력강화사업 지원지구, 축산단지조성 및 축산계열화사업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산분뇨처리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산분뇨처리대책 지역, 나환자 정착촌(농원) 지역

2) 사업대상자

① 단독시설, ② 공동시설(톱밥제조시설포함), ③ 정착촌구조개선, ④ 축분비료유통센터

3) 사업내용

(1) 지원규모 및 조건

가. 축종별 축사㎡단위당 사업비 적용기준

○ 단독시설, 공동시설, 정착촌구조개선은 다음 축종별 축사㎡단위당 사업비에 의거 산출하여 적용

- 닭의 사업비는 평사 12천원/ 케이지 34 천원/㎡

나.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호당 · 법인체기준)

(단위 : 백만원/개소)

구 분	닭	
단 독 시 설	평사	케이지
공 동 시 설	200	
톱밥제조시설	1,000	
정착촌구조개선	120	
액비저장조설치	단독 · 공동시설에 준함	
축분비료유통센터	200	

다. 부대 기계 · 장비의 개소당 한도액

축산분뇨 퇴비처리 장비 : 10백만원이내(스키드로다는 20백만원 이내), 축산폐수탈색장치 : 30백만원이내, 축산분뇨 운반 · 살포용차량, 축분퇴비포장기 및 왕겨팽연화장비(공동시설용에 한함) : 30백만원이내, 폐사축등 유기성폐기물처리시설 : 처리용량에 적합한 실비적용(시 · 도지사 결정), 축분퇴비유통센타(RPC포함)의 왕겨팽연화시설 · 장비 : 120백만원 이내

라. 지원조건

○ 융자조건

- 10년(3년거치 7년균분상환), 연 4.0%

○지원비율

- 단독시설 · 공동시설(톱밥제조시설) : 보조 30%, 융자 70%- 정착촌구조개선 : 보조 70%, 융자 30% - 액비저장조설치지원 : 보조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 축분비료유통센터 : 보조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2) 2004년 사업비 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세부사업별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단독 · 공동시설(톱밥제조시설 포함)	803천㎡	33,726	33,726	10,118	23,608	-	-
정착촌구조개선	48천㎡	2,000	2,000	1400	600	-	-
액비저장조설치	800개소	13,600	4,080	4,080	-	6,800	2,720
축분비료유통센터	5개소	1,000	400	400	-	400	200
합 계	1,656	50,326	24,208	7,200	2,920	40,206	15,998

◈ 축산계열화 사업(공공)

1. 사업내용설명

○ 지원내용 : <별표1> 참조
○ 대상축종 :, 닭, 오리
○ 자금지원대상자 : 시 · 도지사로부터 계열화사업자로 선정된 자

2. 가축계열화사업자금 지원대상 및 내용

구 분	지원범위	지원조건
1. 생산기반시설	○ 종계장 · 종오리장과 부화장 시설	- 사업비의 70% 이내 - 연리5%(농 · 축협등 생산자단체 4%) - 3년거치 7년균분상환
2. 계열주체사육시설	○ 계열주체직영 육계 · 오리 사육시설 - 사무실, 관리사는 자담으로 추진	〃
3. 계열농가생산시설	○ 축사 및 가축사육에 필요한 부대시설	- 사업비의 70%이내 - 연리 4%
4. 가공시설(육가공공장등)	○ 「축산물 도축,가공시설설치지원」 사업과 동일	- 사업비의 70% 이내 - 연리5%(농.축협등 생산자단체 4%) - 3년거치 7년균분상환
5. 유통,판매시설	○ 「축산물판매시설현대화」 사업 내용과 동일	〃
6. 계열화사육비	○ 축산물종합처리장 등과 연계된 계열주체 등 ○ 자축구입비, 사료비, 약품비 등	- 총사업비의 50%이내 - 연리5.5%, 2년이내상환

3. 2004년도 사업비(예산안)내용

(단위: 개소, 백만원)

축 종	사업비	축산발전기금		지방비	자 담
		보조	융자		
닭 · 오리	22,143	-	15,500	-	6,643

◈ 가축개량사업(공공)

1. 닭개량사업

1) 사업내용

(1) 사업내용

○ 시 · 군에 종계장 신고를 필한 농장을 대상으로 검정소 검정과 일반검정을 병행하여 추진
- 검정소 검정 : 42,280수(산란계 29,800수, 육용계 12,480수)
- 농장검정 및 종계 일반검정 : 희망농장 및 물량에 한함

(2) 지원내용 및 보조재원

○ 검정소 검정시설 및 장비와 검정사료비 등 지원
- 지원대상 : 대한양계협회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보조
· 당해연도 가축개량사업보조금지출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조건에 의함

2) 2004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사업량	사 업 비					
		예산액(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합계
		보 조	융 자	계			
사료비	42천수	140		140		93	233
시설비	2종	127		127			127
계		267		267		93	360

◈ 축산자조금 조성

1. 사업내용

1) 배 경

○ '92년부터 2000년까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축산(젖소, 돼지, 닭) 분야 자조금 사업실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00.6.1) 개정을 통한 축산물 자조금 근거 규정 마련
○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2002.5.13)이 제정되어 축산자조활동자금 근거규정 마련

2) 사업내용

○ 축산물(우유,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쇠고기, 오리고기, 녹용 등) 소비촉진 홍보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해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농가가 자조금을 조성할 경우 자조금 조성액 범위내에

서 보조지원

3) 축산자조활동자금의 용도

○ 축산물 소비홍보, 축산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밖에 자조활동자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2004년도 지원계획

산란계 30억(보조 15억원, 자부담 15억원), 육계 20억(보조 10억, 자부담 10억)

◈ 축산물 도축 · 가공시설 설치지원

1. 사업내용

〔 **도축장시설현대화사업** 〕

1) 사업대상자 : 2003년 말 현재 운영중인 도축장 2개소 이상을 통합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휴업 또는 영업정지 업체 제외)

○ 인접 시 · 도(시.군)의 기존도축장 2개소이상 통 · 폐합을 원칙으로 함

2) 지원용도 : 소 · 돼지 · 닭 도축시설, 오 · 폐수처리시설 및 기존 영업장 인수 소요자금 등(부지매입비 및 가공장 설치자금은 지원 제외)

3) 지원조건

○ 연리 4%,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융자 70%, 자담 30%), 사업기간 : 2~3년(사업계획에 의함)

○ 지원액 : 사업계획에 의거 검토 조정 · 반영, 단, 인수자금은 시설자금 지원액의 20% 범위내

※ 사업완료후 HACCP을 적용하여야 함(정당한 사유없이 적용하지 않을 경우 지원자금 회수)

〔 **도축장 시설보완** 〕

1) 사업대상자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부터 HACCP를 지정받거나 시 · 도지사로부터 HACCP 적용 확인서를 발급받은 도축장 중 기존 도축장의 위생 · 환경시설 등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도축장 영업자

2) 지원용도 : HACCP시설 보완, 오폐수처리시설(혈분제조시설 등) 지원

3) 지원조건

○ 연리 4%,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융자 70%,자담 30%), 사업기간 : 1~3년(사업계획에 의함)

○ 지원액 : 사업계획에 의거 검토 조정 · 반영

[닭고기 부분육시설]

1) 사업대상자 : 육계계열화업체중 닭고기가공시설을 보완하거나 별도의 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

<우선순위>

①순위 : 가공품 생산에 HACCP를 이미 적용하고 있거나 적용하고자 시설을 신 증축하고자 하는 업체 또는 생산자단체

②순위 : 브랜드 닭고기를 공급하고자 하는 업체 또는 생산자단체(품질인증업체, 브랜드 상표등록을 우선함)

③순위 : 전년도 닭고기 수출실적이 연간 10만불 이상인 업체 등

④순위 : 기타 정부지원업체 등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등

2) 지원한도액 : 2,500백만원(융자 70%, 자담 30%)

3) 지원조건 : 연리 5%,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4) 지원내용

○ 닭고기 부분육 가공을 위한 시설설치자금(절단, 발골, 포장, 보관 등의 시설)

[계란집하장]

1) 사업대상자

○ 계란집하장 설치 : 대규모 산란계농가, 양계관련축협 등 생산자 단체

○ 계란등급시설 : 계란집하장을 설치하고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

<우선순위>

①순위 : 양계관련 업종별 축협조합

②순위 : 계란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유통시키고자 하는 영농조합법인

③순위 : 브랜드계란(품질인증 또는 상표등록받

은 것에 한함)을 생산하고 계란등급판정에 참여코자 하는 대규모 산란계 농가 등

2) 지원한도액

○ 계란집하장 시설 : 개소당 1,500백만원(융자 70%, 자담 30%)

○ 계란등급시설 : 개소당 100백만원(융자 70%, 자담 30%)

3) 지원조건 : 연리 5%,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4) 지원내용

○ 계란집하장 시설 : 건축물, 운반 · 보관시설, 각 종 기계 · 장비(부지매입비 제외)

○ 계란등급시설 : 계란 인쇄기, 포장, 저장, 운반시설 등

2. 2004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개소)	사업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25	51,106	35,774	-	35,774	-	15,332
도축시설	7	10,500	7,350	-	7,350	-	3,150
축산물가공시설	17	25,500	17,850	-	17,850	-	7,650
사유전문가공시설	1	15,106	10,574	-	10,574	-	4,532

◈ 축산물가공시설 운영자금지원

1. 사업내용

[축산물도매시장 공판장 운영활성화자금]

1) 지원조건 : 1년거치 일시상환

○ 공판장 연리 5%, 도매시장 연리 5.5%

2) 지원기준

○ 지원한도액 : 전년도 1일평균 소.돼지 상장거래금액의 4일분 이내

- 부분육 상장을 실시하는 도매시장 · 공판장은 예산 범위내에서 증액 지원

3) 지원대상 및 조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축산부류 도매시장 공판장

○ 계통출하 등을 통한 생축(소, 돼지)을 도축하여 경매의 방법에 의하여 판매 하여야함

- 경매와 이용도축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이용도축 부분은 제외

- 국내산 쇠고기 부분육 상장 경매를 실시하고 도매시장 · 공판장 우선 지원

○ 축산발전기금 융자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4) 지원자금 용도 및 운용

○ 출하약정 선도금 및 경락대금 결제자금으로 사용

- 출하약정 선도금 : 소.돼지를 공판장.도매시장으로 출하하여 상장경매코자 하는 생산자단체 · 농가 등

- 경락대금 결제자금 : 수탁품에 대하여 출하자에게 지불하는 경락대금

[도축장]

1) 사업대상자 : HACCP 적용 · 운용중인 소 · 돼지 · 닭 · 오리 도축장 영업자(LPC 및 도매시장 · 공판장은 지원 제외)

<우선순위>

①순위 : 최근 3년간 경고,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위반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②순위 : 브랜드업체와 연중계약을 체결하여 도축하는 업체

③순위 : 전년도 도축가동율(일일 평균 도축물량 ÷ 일일 도축능력 × 100)이 50% 이상인 업체

④순위 : 기타 정부지원 업체 등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동 순위일 경우 가동율 등 실적이 높은 순으로 대상자 선정

2) 지원금액 : 개소당 800백만원이내

3) 지원용도 : 인건비, 전기료, 일반관리비 및 HACCP운용 등을 위한 제반 운영자금

4) 지원조건 : 연리 5%, 1년거치 일시상환

[계란등급시설]

1) 사업대상자

○ 계란집하장을 설치하고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

2) 지원한도액

○ 계란등급시설 운영자금 : 개소당 900백만원

3) 지원조건 : 연리 5%, 1년 거치 일시상환

4) 지원내용 : 계란 수집 · 판매 등 운영자금

2. 2004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개소)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축발기금) 계	보 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계	60	93,338	93,338	-	93,338	-	-
축산물종합처리장	7	22,800	22,800	-	22,800	-	-
도매시장 · 공판장	13	5,032	5,032	-	5,032	-	-
오리도축장	4	1,891	1,891	-	1,891	-	-
도축장	19	15,000	15,000	-	15,000	-	-
육가공업체	300천두	37,590	37,590	-	37,590	-	-
계란등급시설	5	3,150	3,150	-	3,150	-	-
한우고기 유통 브랜드경영체	12	7,875	7,875	-	7,875	-	-

◈ 축산물판매시설현대화

1. 사업내용

[닭고기체인점설치]

1) 사업대상자

- 생산자 단체 및 계열화업체로서 닭고기 브랜드 등록이 되어 있고 육가공공장을 운영하면서 직영 판매장 또는 가맹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2) 개소당 사업비 : 기금 융자금 기준 개소당 30백만원 이상으로 대상자별 자금 소요에 따라 탄력적 운용

3) 지원내용 : 판매장 시설비, 주방설비 및 기기 등 시설비 - 점포구입비(임차료 포함)

2. 지원조건

○ 브랜드가맹점 및 닭고기체인점 : 연리 5%, 3년거치 5년상환

○ 식육소매유통시설 : 연리 5%, 5.5%(일반), 3년거치 5년상환

◈ 축산물 등급판정

1. 사업내용

○ 등급판정소운영비를 지원하여 도축단계에서의 소 · 돼지 등급판정

○ 계란 및 닭고기 등급판정 추진

○ 소매단계에서 식육의 등급별 구분판매 실시 홍보

○ 등급판정 결과를 출하자에 통보

○ 등급판정 기술 개선

○ 생산농가, 유통업자,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2. 2004년도 사업비(예산안)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예 산 액 (축산발전기금)			지방비	자부담
		합계	계	보조	융자		
계		13,520	7,824	7,824	-	-	5,696
등급판정소운영	1개소	13,520	7,824	7,824	-	-	5,696

◈ 가축질병근절대책

1. 사업내용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운영지원사업

- 사업내용 : 농장예찰 · 채혈, 예방주사 · 소독 지원 및 교육 · 홍보사업 실시
- 지원대상 : 본부(19명), 8도본부(24명), 38출장소(방역요원 175명) 운영비 · 인건비 및 기자재 지원
- 지원조건 : 운영비 · 인건비 및 기자재 100% 보조(단, 출장소 방역요원 인건비는 지방비에서 20% 부담)

○ 전국일제소독의 날 운영지원사업

- 사업내용 : 매주 수요일을 "전국일제소독의 날"로 지정, 양축농가의 자율적인 일제소독 지도

○ 소독이 상대적으로 소홀한 소규모 농가는 소독약품 공급(27회) 및 공동방제단(10,355개단 기준) 운영(운영비 지원 연 21회)으로 소독 지원

○ 전국일제소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역축협에 소독차량(20대) 지원

- 지원대상 : 농협(소독약품 · 소독차량) 및 마을단위 공동방제단(운영비)
- 지원조건 : 소독약품(국비 100%), 공동방제단 운영비(국비 50, 지방비 50), 소독차량(국비 50, 자부담 50)

○ 가축전염병 발생신고 · 방역관리 위반농가 신고포상금 지급사업

- 구제역 · 돼지콜레라 · 광우병 등 발생신고자, 예방접종 · 이동제한 등 방역규정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건당 20~100만원, 국비 100%)

◈ 가축방역

1. 사업내용

○ 긴급방역재료비 : 전염병 발생지역 소독약 및 일제소독에 소요되는 약품 공급 등

○ 예방약품 등 공급 : 예방주사 · 검진 · 기생충구제, 진단킷트 등 약품공급

○ 예방접종 시술비 : 정부지원 예방약 접종요원에 대한 접종시술비 지원

○ 수의사 연수교육 : 대한수의사회의 수의사 교육 실시비용 지원

○ 살처분보상금 및 도태장려금 : 구제역, 돼지콜레라, 오제스키병 등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지원 : 방역보조원, 방역장비 등

2. 사업대상 및 지원기준

○ 사업대상 : 시도(군), 가축위생시험소(44개소)

○ 지원기준 : 국고 70%, 지방비 30%수준 (세부사업별로 지원기준 상이)

- 예방주사, 검진 및 기생충구제 등 약품비 : 국비 70%, 지방비 30%
- 살처분보상금, 혈청검사사업 등 : 국비 100%
- 가축위생시험소 방역보조원 및 장비 지원 : 국비 50%, 지방비 50%
- 예방접종 시술비 : 국비 50~60%, 지방비 40~50%

3. 2004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38,239	27,656	27,656	-	10,563	20
긴급방역재료비	-	400	400	400	-	-	-
살처분보상금	455천두	7,800	7,800	7,800	-	-	-
수의사연수교육	700명	60	40	40	-	-	20
예방주사 등	1,263백만두	23,145	16,499	16,499	-	6,646	-
방역장비	19점	6,834	2,917	2,917	-	3,917	-

◈ 가축공제

1. 사업내용

○ 대상 : 닭, 공제가입금액 : 가입자 자율결정, 공제가입기간 : 1년단위(월 단위도 가능)

○ 공제요율: 추후 사업시행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공제료에 대한 정부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납입공제료 : 축발기금보조 50%, 가입자 부담 50%

○ 공제금 지급수준(보장범위) : 시가(전월평균 산지가격)의 80%~100%까지 지급

2. 2004년 사업비 내용

(단위 : 천수 백만원)

세부사업	사업량 (천두)	사업비				
		예산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합계	29,602	1,634	817			817
납입공제료	29,602	1,634	817			817
닭	29,602	1,634	817			817

구분	보장범위 (보상하는 사고)	보장내용 (공제금 지급)	비고
닭	화재, 풍재, 수재에 의한 손해	가입금액과시가중 적은 금액의 95% 까지 보상	제한없음

◈ 축산업등록지원사업(공공)

1. 사업대상

○ 부화업, 종축업, 계란집하업 및 가축사육업 경영자로서 축산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대상이 되는 축산업 경영자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3,000백만원
- 부화업, 종축업, 계란집하업, 백세미용알생산업 : 개소당 100백만원 이내
- 가축사육업 : 개소당 50백만원 이내

○ 지원조건 : 융자 80%, 3년거치 7년상환, 연리 3%

3. 사업내용

○ 축산업등록시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는데 소요되는 자금지원

○ 지원대상 시설 · 장비 : 별표 참조

※ 축산업등록과 관련없는 시설 · 장비 구입 등은 지원 제외

〈별 표〉

▲ 지원대상 시설장비 종류

1) 부화업

○ 부화장과 계사의 격리(서로 독립된 건물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부화장에 부화실과 병아리방 구비 비용

○ 부화실과 병아리방을 다음과 같이 시설할 경우 소요비용
- 납바닥과 내벽의 콘크리트 등 견고한 내구성 재료 사용하여야 하며, 천장은 낙진 · 낙수를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
- 납배수시설 및 환기시설 구비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소독설비 설치 비용

2) 종축업

(1) 종계업

○ 계종별, 세대별, 사육단계별 구분사육시설

○ 견고한 내구성 자재의 계사 설치비용

○ 종란을 위생 관리 및 소독시설

○ 종계의 방역을 위한 비용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소독설비 설치비용

○ 오수 ·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적합한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비용

3) 계란집하업

○ 계란집하장을 다음과 같이 시설할 경우 소요비용
- 바닥과 내벽에 콘크리트 등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 천장의 낙진 · 낙수 방지, 환기시설설치

○ 계란의 분류 · 포장 · 운반 장비
- 계란중량선별기, 계란 포장장비, 지게차, 로더, 콘베이어벨트 등 집하된 계란 운반장비

○ 사업장 출입자 및 출입차량 소독시설 또는 장비

4) 백세미용 알 생산업

○ 견고한 내구성 자재의 계사 설치비용

○ 종란을 위생 관리 및 소독시설

○ 종계 및 산란계의 방역을 위한 비용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소독설비 설치비용

○ 오수 ·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적합한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비용

5) 가축사육업

가축 두당 최소 가축사육시설 면적확보를 위해 가축사육시설 등을 증 · 개축 또는 보수하는 경우